

## 『고단위 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』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계약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거치식예금약관』, 『고단위 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』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, 동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

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:『고단위 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』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보장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을 통하여 효율적 자산운용 기회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

## 2 **거래 조건** :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중서에 따릅니다.

(2013.12.2 현재, 세전, 연)

구 분	내 용						
가 입 대 상	퇴직연금사업자						
운 용 지 시 가 능 자 격	이 예금의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고객은 "퇴직연금 신규가입금액 또는 운용지시일 전일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액"(이하 "기준금액"이라 함)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퇴직연금 가입자로 함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의 경우 기준금액 5억원 이상 2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경우 기준금액 3억원 이상 3. 개인형 퇴직연금(개인형IRP)의 경우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						
가 입 기 간	가입기간은 6개월, 1년 이상 3년 이하 연단위로 함						
가 입 금 액	제한없음						
기 본 상 품	정기예금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						
<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제도별 적용이자율> (2013.12.2 기준/ 단위: %)							
	구분	운용기간	DB	DC	IRP		
적 용 이자율	고단위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	_	최저2.59~최고2.88	2.88	2.88		
	고단위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	형 1년	최저2.75~최고3.05	3.05	3.05		
	고단위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	형 2년	최저3.09~최고3.43	3.43	3.43		
	고단위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	형 3년	최저3.25~최고3.61	3.61	3.61		
	고단위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	영 4년	최저3.34~최고3.71	3.71	3.71		
	고단위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	형 5년	최저3.52~최고3.91	3.91	3.91		
	※예금 신규일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적용						

구 분	내 용							
	1)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							
	특별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이자율							
중도해지이자율	□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□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<sup>①</sup>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□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□ 수탁자의 사임 □ 하나은행 내 계약이전 □ 하나은행 내 가입자 제도 전환 □ 수수료납부 □ 가입자의 사망 □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							
	전날까지에 대해 '신규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에 대해 '신규 또는 재예치 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자율 - 0.8%'							
	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2) 중도해지이자을 중도해지 적용기준금리 ' 사 충경과기간별 차등률 <sup>2)</sup> 주1)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: 신규(또는 재예치) 당시 고시 금리 주2) 충경과기간별 차등률 (경과일수 / 계약일수)							
	경과일수 0.1초과 0.2초과 0.3초과 0.4초과 0.5초과 0.6초과 0.7초과 0.8초과 0.9초과							
	/계약일수 0.1이내 ~0.2이내 ~0.3이내 ~0.4이내 ~0.5이내 ~0.6이내 ~0.7이내 ~0.8이내 ~0.9이내 ~1.0미만							
	*경과기간별 5% 10% 15% 20% 25% 30% 35% 40% 45% 50% **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"0.9초과~1.0미만" 구간의 차등률을 적용							
만기 후 이자율	예금의 만기 시 재예치되는 경우 만기 후 이자율은 없음							
만시기 재예치	1)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된 금액을 재예치 2) 재예치 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함							
재예치의 처리	- 원금과 이자 재예치 - 재예치 횟수 제한 없음 - 재예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이자율을 재예치일 이자율로 적용 - 동일한 계좌번호 사용 (계좌번호 변경 없음) (예) 2012.02.01에 2년제 고단위 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에 가입하였다면, 예금만료일 2014.02.01 에 가입기간 2년의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 됨 *재예치 예금의 신규일: 2014.02.01 / 만기일: 2016.02.01							
분할해지	만기해지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							

구 분	내 용		
	개인형퇴직연금:해당 확정기여형:해당 확정급여형:비해당	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및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 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
예금자보호여부	*용어안내	□ 개인형퇴직연금: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•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□ 확정기여형: 사용자(기업)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 □ 확정급여형: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	

## 3 유의사항 : 본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 대상 전용상품입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퇴직연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-1111 (서비스코드: 예금상담 012)로 연락 바랍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hana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